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수정)]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발행 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2025. 1. 8.자 ‘한국유니온제약 제 3 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의 내용 중 ‘안건(회의 목적사항)’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수정되어 본건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채	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사채관리회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아 래 ▶

1. 일 시

2025 년 2 월 7 일(금요일) 10:00 (오전 10 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의실 101 호

3. 참석대상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4. 소집이유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5 항의 안건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결의를 위함

5. 안건(회의 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2023 년 3 월 17 일 발행 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라 함) 인수계약서 제 3 조의 사채조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만기의 변경(연장)

만기를 2027 년 9 월 17 일로 변경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만기	2026 년 3 월 17 일	2027 년 9 월 17 일

2) 조기상환청구권의 삭제

가) 1 차부터 6 차까지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을 삭제(소멸)한다. 본건 2025. 2. 7.자 사채권자집회 결의(이하 ‘**본건 결의**’라 함)의 효력 발생 전에 위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즉 동일하게 처음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며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사유), 기타 채무불이행 역시 불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전자등록금액 기준)	변경내용
	FROM	TO			
1차	2024. 7. 19.	2024. 8. 19.	2024. 9. 17.	104.6429%	삭제(소멸)
2차	2024. 10. 18.	2024. 11. 18.	2024. 12. 17.	105.4510%	삭제(소멸)
3차	2025. 1. 16.	2025. 2. 17.	2025. 3. 17.	106.2691%	삭제(소멸)
4차	2025. 4. 18.	2025. 5. 19.	2025. 6. 17.	107.0975%	삭제(소멸)
5차	2025. 7. 19.	2025. 8. 18.	2025. 9. 17.	107.9362%	삭제(소멸)
6차	2025. 10. 18.	2025. 11. 17.	2025. 12. 17.	108.7854%	삭제(소멸)

나) 본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조기상환일이 경과하였으나 가)항에 따라 그 조기상환청구권 및 행사의 효력이 소멸하는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이후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표면이자를 2025 년 6 월 17 일에 2025 년 6 월 17 일 이자지급기일의 표면이자 몫과 함께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위 2025 년 6 월 17 일 이자지급기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그 불복절차가 2025 년 6 월 17 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 포함), 나)항의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나)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이후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표면이자를 법원 인가결정일(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불복절차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첫 표면이자 이자지급기일에 그 이자지급기일의 표면이자 몫과 함께 일괄하여 지급한다.

라) 나)항 및 다)항의 표면이자에 적용할 표면이율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 따른다.

마) 나)항 또는 다)항에 따른 이자 지급이 이뤄진 경우 나)항의 사채권자에 대한 ‘표면이자’와 관련한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사유), 기타 채무불이행은 불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3)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

가) 표면이율을 연 3.0%로,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복리 연 6.0%로 각 변경하되, 2025년 6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변경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그 전에 이미 계산 또는 지급한 몫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표면이율	연 2.0%	연 3.0%	2025년 6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적용
만기보장수익률	연 5.0%	연 6.0%	상동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위 2025년 6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어 그 불복절차가 2025년 6월 17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 포함) 변경된 표면이율 연 3.0%는 법원 인가결정일(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불복절차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첫 표면이자 이자지급기일의 표면이자 몫부터 적용한다. 단, 이 경우에도 4)항의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인 전자등록금액의 115.3026%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의 변경

위 1)항 및 3)항의 변경된 만기,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을 전자등록금액의 115.3026%로 변경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만기상환금액	전자등록금액의 109.6452%	전자등록금액의 115.3026%

5) 담보제공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전체 사채권자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부동산	비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삼환하이팩스에이동 제 4 층 제 416 호	집합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79.1 m ²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삼환하이팩스에이동 제 4 층 제 417 호	집합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31.67 m ²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9	토지(공장용지) 4900 m ²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9 제에이동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 층 공장 1 층 3002.06 m ² , 2 층 1968.32 m ² , 지하 1 층 132.84 m ² 부속건물 제이동 벽돌구조 기타지붕 1 층 화장실 21.6 m ²
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토지(공장용지) 17449 m ²
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 층 공장 1 층 3,713.04m ² , 2 층 3,000.07 m ²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폐기물저장소 1 층 60 m ²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씨동	철골조, 스텔조, 시멘트블럭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1,784.25 m ²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디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 층 공장 1 층 854.67m ² 2 층 829.92 m ² 3 층 829.92 m ²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이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창고) 989.05m ²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42 지동	보강블록조 기타지붕 단층 위험물저장소 28m ²
----	--------------------------------	---

나) 가)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집행과 관련하여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중 한 명인 박광석 (1961. 4. 8.생)을 전체 사채권자들의 대표자 겸 대리인으로 정하며, 발행회사와 박광석은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가)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집행을 협의하고 실행한다.

다) 가)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금융기관이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와 관련한 발행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항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6. 소집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본건 사채의 발행회사 지위)

7. 참고사항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신분증(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 ③ 인감(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또는 인감 날인된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 ④ 인감증명서(집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사록 공증용)

- 대리행사의 경우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 ③ 인감 날인된 공증 위임장(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 ④ 위임인 인감증명서 2부(집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임장 1 부는 위임 여부 확인용, 나머지 1 부는 의사록 공
증용)

⑤ 대리인 신분증

- 2) 사채권자는 집회 1 주간 전인 2025 년 01 년 30 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에 따라 해
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
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 498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5)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 ‘위임장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 상단에 첨부된 ‘사채권자 집회 관련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6)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유니온제약㈜ 경영기획실(담당자 조해선, Tel. 02-489-361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1 월 17 일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병하